

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02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. 9. 3.  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임종국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49번 「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김재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9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11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상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한 해당용어의 정비와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의 명확화, 중앙 및 지역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용어 정비,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, 주거복지사업으로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함(안 제7조).

- 위원의 해촉사유에 “장애”표현을 수정함(안 제16조제2호)
-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17조)
- 종전의 “주거복지센터”를 “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”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센터와 구분함(안 제19조)
-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20조)

#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제11호(종전 제10호) 중 “주거약자 등의”를 “시장이”로, “필요한”을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10.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

제16조제2호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”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주거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”를 “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(이하 “중앙센터”라 한다.)”로 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주거복지센터의 기능) ① 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
2. 주거복지 정보 제공·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3.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정책개발
4.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
5.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
6.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·조사사업
7.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지원
8.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
2. 주거복지 정보제공,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
3.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
4.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
5.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
6.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
7.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

## 8.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

9.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, 제6항, 제7항 중 “센터”를 각각 “중앙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을 “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”로, “센터”를 “중앙센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(대안)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주거복지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</u>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</u> 제21조에 따른 저소득 시민집수리 지원사업</p> <p>4.~ 9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 <p>10. 그 밖에 <u>주거약자</u>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<u>필요한</u> 사업</p>	<p>제7조(주거복지사업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「<u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</u>」 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</u>」 ----- -----</p> <p>4.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</u></p> <p>11. ----- <u>시장이</u> ----- -----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 (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16조 (해촉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</u>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<u>예산의 범위 내에서</u>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수당) ----- ----- ----- <u>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</u> ----- -----.</p>
<p>제19조(주거복지센터의 설치)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<u>주거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</u>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(이하 “지역센터”라 한다.)를 설치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(주거복지센터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(이하 “중앙센터”라 한다.)</u>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(센터의 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 제1항에 관한 사항</p> <p>2.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</p> <p>3.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</p> <p>4.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</p> <p>5.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</p> <p>6.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·조</p>	<p>제20조(주거복지센터의 기능) ① 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 제1항에 관한 사항</p> <p>2. 주거복지 정보 제공·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</p> <p>3.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정책개발</p> <p>4.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</p> <p>5.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</p> <p>6.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·조</p>



현행	개정안
<p><u>사사업</u></p> <p><u>7.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	<p><u>사사업</u></p> <p><u>7.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지원</u></p> <p><u>8.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<u>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u></p> <p><u>1.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주거복지 정보제공,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</u></p> <p><u>3.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</u></p> <p><u>4.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1조(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<u>센터</u> 및 지역센터의 설치·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5. <u>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</u></p> <p>6. <u>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</u></p> <p>7. <u>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</u></p> <p>8. <u>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</u></p> <p>9. <u>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제21조(관리 및 운영) ① ----- ----- <u>중앙센터</u> ----- <u>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③ <u>중앙센터</u>----- -----.</p>
<p>④ 제1항 중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은 <u>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④ ----- ----- 「<u>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----- -----.</p>
<p>⑤ (생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⑥ ----- <u>중앙센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⑦ 시장은 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</p>	<p>⑦ ----- <u>중앙센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⑧ (생략)</p>	<p>⑧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4조(재원) 시장은 <u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</u>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, 이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시행과 <u>센터</u> 및 지역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제24조(재원) ----- 「<u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</u>」 -----  -----  ----- <u>중앙센터</u> -----  -----  -----  -----</p>